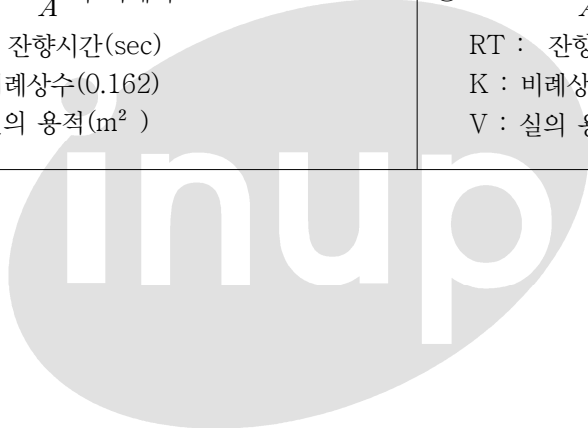


페이지	항 목	오	정
837	4-4편 실내건축환경	<p>⑤ 흡음재료의 위치와도 무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RT = K \frac{V}{A}$의 식을 유도했다.</p> <p>RT : 잔향시간 K : 비례상수(0.162) V : 실의 용적(m²) A : 흡음력 = $\bar{\alpha}$ (평균흡음률) × S(실내표면적)(m²) 잔향시간은 실용적에 비례하고 실내 흡음력에 반비례한다.</p>	<p>⑤ 흡음재료의 위치와도 무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RT = K \frac{V}{A}$의 식을 유도했다.</p> <p>RT : 잔향시간 K : 비례상수(0.162) V : 실의 용적(m³) A : 흡음력 = $\bar{\alpha}$ (평균흡음률) × S(실내표면적)(m²) 잔향시간은 실용적에 비례하고 실내 흡음력에 반비례한다.</p>
		<p>11 Sabin의 잔향이론</p> <p>① $RT = K \frac{V}{A}$의 식에서</p> <p>RT : 잔향시간(sec) K : 비례상수(0.162) V : 실의 용적(m²)</p>	<p>11 Sabin의 잔향이론</p> <p>① $RT = K \frac{V}{A}$의 식에서</p> <p>RT : 잔향시간(sec) K : 비례상수(0.162) V : 실의 용적(m³)</p>



2020) 10개년 실내건축산업기사 과년도 1차 정오표[2020.02.20]

페이지	항 목	오	정															
48	9번 문제 해설 ㉔ 항목 수정	㉔ 기하학적 형태는 자연적 형태의 특징을 느끼게 한다.	㉔ 기하학적 형태는 인공적 형태의 특징을 느끼게 한다.															
745	8) 대수선 표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의 부분(주요구조부)</th> <th>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내력벽</td> <td>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m² 이상 수선·변경</td> </tr> <tr> <td>기둥, 보, 지붕틀</td> <td>증설·해체하거나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td> </tr> <tr> <td>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td> <td rowspan="2">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td> </tr> <tr> <td>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td> </tr> <tr> <td>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삭제)</td> <td>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삭제)</td> </tr> <tr> <td>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td> <td>경계벽의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td> </tr> <tr> <td>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 6층 이상 건축물 - 높이 22m 이상 건축물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안의 건축물 중 2000m² 이상 다중이용업·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td> <td>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m² 이상 수선, 변경</td> </tr> </tbody> </table>		건축물의 부분(주요구조부)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	내력벽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m ² 이상 수선·변경	기둥, 보, 지붕틀	증설·해체하거나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삭제)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삭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 6층 이상 건축물 - 높이 22m 이상 건축물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안의 건축물 중 2000m ² 이상 다중이용업·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² 이상 수선, 변경
건축물의 부분(주요구조부)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																	
내력벽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m ² 이상 수선·변경																	
기둥, 보, 지붕틀	증설·해체하거나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삭제)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삭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 6층 이상 건축물 - 높이 22m 이상 건축물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안의 건축물 중 2000m ² 이상 다중이용업·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² 이상 수선, 변경																	
745	9) 리모델링 내용 수정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 하는 행위를 말한다.															
772	1) 방화구획의 기준 표 내용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의 규모</th> <th>구 획 기 준</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0층 이하의 층</td> <td>바닥면적 1,000m² (3,000m²) 이내마다 구획</td> <td rowspan="4">*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임.</td> </tr> <tr> <td>지상층, 지하층</td> <td>매층마다 구획(면적에 무관)</td> </tr> <tr> <td rowspan="2">11층 이상의 층</td> <td>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td> <td>바닥면적 500m² (1,500m²) 이내마다 구획</td> </tr> <tr> <td>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td> <td>바닥면적 200m² (600m²) 이내마다 구획</td> </tr> </tbody> </table> <p>필로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p>		건축물의 규모	구 획 기 준	비 고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m ² (3,000m ²) 이내마다 구획	*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임.	지상층, 지하층	매층 마다 구획(면적에 무관)	11층 이상의 층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	바닥면적 500m ² (1,500m ²) 이내마다 구획	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바닥면적 200m ² (600m ²) 이내마다 구획		
건축물의 규모	구 획 기 준	비 고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m ² (3,000m ²) 이내마다 구획	*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임.																
지상층, 지하층	매층 마다 구획(면적에 무관)																	
11층 이상의 층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		바닥면적 500m ² (1,500m ²) 이내마다 구획															
	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바닥면적 200m ² (600m ²) 이내마다 구획															

페이지	항 목	오	정
786	① 용어의 정의 1. 목적 수정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u>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2] 소방시설 수정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 <u>구조</u> 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87	[2] 소방시설 표 내용 수정	3.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3. 피난 <u>구조</u> 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